

「평창군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0년 10월 23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 : 2020년 11월 4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61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20년 11월 4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환경위생과장)

가. 제안이유

공공요금 과오납, 부과행위 취소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, 납부한 공공요금에 대한 반환의무가 발생함에도 기존 조례상의 공공요금 미반환규정으로 인해 환불불가 등 주민 불이익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위법·소극 행정 행위를 예방하고 주민권익을 보호하고자 조례개정을 제안함.

나. 주요내용

-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조항(제21조)을 삭제하고자 함.
- ※ 제21조(이용료의 반환) 이미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이용섭)

- 본 조례안은 기존 불합리 했던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을 삭제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를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제21조(이용료의 반환) 이미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</u>	<삭 제>